

동력자원부고시 제84-32호

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고시중 개정

석유사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에 관한 고시(제84-6호) 중 나프타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4. 11. 22.

동력자원부장관

(단위: 원/ℓ)

유종	반출가격	세포함가격
나프타	143.66 원	158.03 원
총전	154.64 원	170.10 원

부 칙

- (시행일)이 고시는 1984. 11. 22부터 시행한다.
- (나프타의 최고 판매가격과 결정방법) 1985년 4월 1일부터 이 고시에 의한 나프타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별표 나프타의 최고판매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조정되며, 조정된 가격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 판매가격으로 본다.

<별 표>

나프타의 최고판매가격 결정방법

- 나프타의 최고판매가격(이하 “국내나프타가격”이라 한다)은 매분기별로 분기중의 「국제나프타가격」이 국내나프타가격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「국제나프타가격」으로 조정되고, 조정된 가격의 적용일은 다음 분기 최초월의 1일로 한다.
- 대한석유협회는 이 결정방법에 따라 조정되는 국내나프타가격을 산출하여 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의 확인을 거쳐 즉시 정유회사와 실수요자에게 통보하고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국제나프타가격의 산출방법 및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.

가. 국제나프타가격이라 함은 Platt's Oilgram Price Report지에 게재된 일본 C & F 가격의 중간치의 당해분기 일일 산술 평균가격에 당해분기의 일일평균환율(전신환 매도율)을 곱하여 산출되는 가격으로 한다. 다만 가격이 게재되지 않거나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날은 직전일의 가격 및 환율을 적용한다.

나. 국제나프타가격 산출시에 적용되는 환산계수는 1메트릭톤은 8.9바렐로, 1바렐은 158.984리터로 하고 산출된 국제나프타가격은 소수점 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한다.

동력자원부고시 제84-33호

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고시중 개정

석유사업법시행령 제13조,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개정고시(동력자원부 고시 제84-9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4. 11. 22.

동력자원부장관

1 항(석유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금액) 가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은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1.25\$(비축기금 0.55\$, 개발기금 0.10\$, 안정기금 0.60\$)에 통관일 이내의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(1) 이 고시는 1984. 11. 22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.